

2023 ANNUAL REPORT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PART

2

언론중재위원회 법정사업

제1장 언론조정

제1절 개요

제2절 조정사건 청구현황

제3절 조정사건 처리결과

제4절 평가

제2장 시정권고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추진실적

제3절 평가

제3장 선거기사심의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추진실적

제3절 평가

제장

언론조정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23 Annual Report

제1절 | 개요

1 조정 및 중재를 통한 언론분쟁 해결

위원회는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명예 및 초상권, 음성권, 사생활 등 인격권 침해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근거한 조정·중재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보도 또는 그 매개(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재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대상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함으로써 신속·원만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한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공적 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5년부터 매년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인터넷 기반 매체(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이 전체 사건의 약 70% 중반을 상회(2023년 78.5%)하고 있다.

2023년 위원회는 유튜브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 콘텐츠 중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등 채널에 게재된 뉴스 콘텐츠를 조정대상 매체로 포함하는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 다만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사가 아닌 자(개인 등)가 제공한 유튜브등의 뉴스 콘텐츠를 조정대상 매체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면밀한 법률적, 실무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중재부의 구성

위원회는 총 18개 중재부(서울 8개, 지역 10개)를 운영하고 있다. 각 중재부는 현직 법관(부장판사)을 포함하여 변호사,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전직 언론인, 그리고 언론 관련 학식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사회 저명인사 등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절 | 조정사건 청구현황

1 청구현황

위원회가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은 4,085건으로 전년 대비 910건(28.7%) 증가하였다.

표 1. 최근 3년간 조정청구현황

(2021. 1. 1. ~ 2023. 12. 31.)

구분 \ 연도	2021	2022	2023
청구건수	4,278	3,175	4,085

2 청구권별 현황

2023년에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의 청구권별 현황은 정정보도청구 1,943건(47.6%), 손해배상청구 1,312건(32.1%), 반론보도청구 731건(17.9%), 추후보도청구 99건(2.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체 청구 중 정정보도청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을 기록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손해배상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2021. 1. 1. ~ 2023. 12. 31.)

청구명 \ 연도	2021	2022	2023	합계
정정	1,832 (42.8)	1,432 (45.1)	1,943 (47.6)	5,207 (45.1)
반론	870 (20.3)	653 (20.6)	731 (17.9)	2,254 (19.5)
추후	204 (4.8)	81 (2.6)	99 (2.4)	384 (3.3)
손배	1,372 (32.1)	1,009 (31.8)	1,312 (32.1)	3,693 (32.0)
계	4,278 (100)	3,175 (100)	4,085 (100.0)	11,538 (100.0)

* () 안의 숫자는 %

3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건수가 2,491건(61.0%)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뉴스서비스 498건(12.2%), 신문 487건(11.9%), 방송 345건(8.4%), 뉴스통신 218(5.3%) 순으로 이어졌다.

인터넷 기반 매체(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신청은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표 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2021. 1. 1. ~ 2023. 12. 31.)

매체유형 \ 연도	2021	2022	2023	합계	
신문	일간	322	234	388	944
	신문	(7.5)	(7.4)	(9.5)	(8.2)
	주간	131	75	99	305
	신문	(3.1)	(2.4)	(2.4)	(2.6)
방 송	495 (11.6)	387 (12.2)	345 (8.4)	1,227 (10.6)	

매체유형 \ 연도	2021	2022	2023	합계
잡 지	8 (0.2)	6 (0.2)	8 (0.2)	22 (0.2)
뉴스통신	216 (5.0)	149 (4.7)	218 (5.3)	583 (5.1)
인터넷신문	2,477 (57.9)	1,857 (58.5)	2,491 (61.0)	6,825 (59.2)
인터넷뉴스 서비스	609 (14.2)	450 (14.2)	498 (12.2)	1,557 (13.5)
기 타	20 (0.5)	17 (0.5)	38 (0.9)	75 (0.7)
계	4,278 (100)	3,175 (100)	4,085 (100.0)	11,538 (100.0)

* () 안의 숫자는 %

4 침해유형별 청구현황

2023년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가 4,042건(98.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초상권 침해 21건(0.5%), 재산상 손해 4건(0.1%), 사생활 및 성명권 침해 각 3건(0.1%), 음성권 침해 1건(0.0%) 등의 순이었다.

표 4.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021. 1. 1. ~ 2023. 12. 31.)

침해유형 \ 연도	2021	2022	2023	합계
명예훼손	4,123 (96.4)	3,093 (97.4)	4,042 (98.9)	11,258 (97.6)
초상권 침해	66 (1.5)	41 (1.3)	21 (0.5)	128 (1.1)
음성권 침해	13 (0.3)	2 (0.1)	1 (0.0)	16 (0.1)
성명권 침해	7 (0.2)	2 (0.1)	3 (0.1)	12 (0.1)
사생활 침해	12 (0.3)	15 (0.5)	3 (0.1)	30 (0.3)

침해유형 \ 연도	2021	2022	2023	합계
재산상 손해	47 (1.1)	19 (0.6)	4 (0.1)	70 (0.6)
기 타	10 (0.2)	3 (0.1)	11 (0.3)	24 (0.2)
계	4,278 (100)	3,175 (100)	4,085 (100.0)	11,538 (100.0)

* ()안의 숫자는 %

5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

신청인 유형별로 2023년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신청한 사건이 2,225건(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기업체 757건(18.5%), 일반단체 536건(13.1%), 지자체 154건(3.8%), 언론사 141건(3.5%)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22년에 비해 일반단체의 청구건수는 감소한 반면 기업체와 지자체, 언론사의 청구건수는 증가했다.

표 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21. 1. 1. ~ 2023. 12. 31.)

신청인 \ 연도	2021	2022	2023	합계
개인	2,569 (60.1)	1,699 (53.5)	2,225 (54.5)	6,493 (56.3)
국가기관	87 (2.0)	32 (1.0)	77 (1.9)	196 (1.7)
지자체	158 (3.7)	85 (2.7)	154 (3.8)	397 (3.4)
공공단체	105 (2.5)	100 (3.1)	101 (2.5)	306 (2.7)
일반단체	499 (11.7)	710 (22.4)	536 (13.1)	1,745 (15.1)
종교단체	48 (1.1)	28 (0.9)	46 (1.1)	122 (1.1)
기업체	674 (15.8)	441 (13.9)	757 (18.5)	1,872 (16.2)

신청인 \ 연도	2021	2022	2023	합계
언론사	78 (1.8)	39 (1.2)	141 (3.5)	258 (2.2)
교육기관	60 (1.4)	37 (1.2)	48 (1.2)	145 (1.3)
기타		4 (0.1)		4 (0.0)
계	4,278 (100)	3,175 (100)	4,085 (100.0)	11,538 (100.0)

* () 안의 숫자는 %

6 중재부별 접수현황

2023년 조정사건을 중재부별로 살펴보면 전체 4,085건 중 서울 중재부(8개)가 3,114건(76.2%), 지역 중재부(10개)가 971건(23.8%)을 접수하여 처리했다. 지역중재부 중에서는 경기중재부 357건(8.7%), 대구중재부 123건(3.0%), 광주중재부 117건(2.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북중재부는 98건(2.4%), 충북중재부는 82건(2.0%)을 접수하여 2022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경기중재부는 매년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별도로 중재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인천광역시와 경기중재부 관할 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소재하고 있는 언론사의 수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6.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접수현황

(2021. 1. 1. ~ 2023. 12. 31.)

중재부 \ 연도	2021	2022	2023	합계
서울중재부	2,969 (69.4)	2,377 (74.9)	3,114 (76.2)	8,460 (73.3)
부산중재부	108 (2.5)	55 (1.7)	23 (0.6)	186 (1.6)
대구중재부	153 (3.6)	114 (3.6)	123 (3.0)	390 (3.4)
광주중재부	131 (3.1)	81 (2.6)	117 (2.9)	329 (2.9)

종재부 \ 연도	2021	2022	2023	합계
대전종재부	52 (1.2)	60 (1.9)	67 (1.6)	179 (1.6)
경기종재부	390 (9.1)	250 (7.9)	357 (8.7)	997 (8.6)
강원종재부	28 (0.7)	25 (0.8)	33 (0.8)	86 (0.7)
충북종재부	61 (1.4)	39 (1.2)	82 (2.0)	182 (1.6)
전북종재부	149 (3.5)	50 (1.6)	98 (2.4)	297 (2.6)
경남종재부	174 (4.1)	99 (3.1)	58 (1.4)	331 (2.9)
제주종재부	63 (1.5)	25 (0.8)	13 (0.3)	101 (0.9)
계	4,278 (100)	3,175 (100)	4,085 (100.0)	11,538 (100.0)

7 접수 경로별 청구현황

신청서 접수 경로별로는 이메일이 2,814건(68.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자신청 접수건은 매년 증가하여 2023년에는 1,123건(27.5%)이었고, 우편 97건(2.4%), 방문 46건(1.1%), 구술 5건(0.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메일과 전자신청을 통한 온라인 접수 비중이 2021년 92.7%, 2022년 95.5%, 2023년 96.4%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방문·우편·구술 등의 오프라인 접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7. 최근 3년간 접수 경로별 청구현황

(2021. 1. 1. ~ 2023. 12. 31.)

연도 \ 구분	방문	우편	전자신청	구술	이메일	계
2021	144 (3.4)	160 (3.7)	858 (20.1)	10 (0.2)	3,106 (72.6)	4,278 (100)
2022	49 (1.5)	93 (2.9)	1,083 (34.1)	2 (0.1)	1,948 (61.4)	3,175 (100)
2023	46 (1.1)	97 (2.4)	1,123 (27.5)	5 (0.1)	2,814 (68.9)	4,085 (100.0)

* () 안의 숫자는 %

제3절 | 조정사건 처리결과

1 개요

2023년 조정사건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1,599건(39.1%), 취하 1,340건(32.8%), 조정불성립결정 793건(19.4%), 기각 145건(3.5%), 각하 113건(2.8%) 직권조정결정 95건(2.3%) 순이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조정성립으로 종결된 사건의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고, 피해구제로 취하 처리된 사건 비율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정불성립결정이나 직권 조정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의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표 8.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1. 1. 1. ~ 2023. 12. 31.)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21	4,278	1,221	146	73 [4]	894 [16]	596	132	838	378	62.7%
	%	28.5	3.4	1.7	20.9	13.9	3.1	19.6	8.8	
2022	3,175	949	69	34	684 [8]	450	193	686	110	67.6%
	%	29.9	2.2	1.1	21.5	14.2	6.1	21.6	3.5	
2023	4,085	1,599	61	34 [3]	793 [20]	145	113	1,152	188	74.1%
	%	39.1	1.5	0.8	19.4	3.5	2.8	28.2	4.6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 된 건수

* 피해구제율 =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취하(구제)+그 외 피해구제 건} / {전체 조정청구건수-(기각+각하)} × 100

2

피해구제율 현황

피해구제율은 전체 조정신청에서 기각 또는 각하된 건수를 제외한 사건 중 조정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정정이나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으로 피해구제가 된 비율을 말한다. 즉, 조정이 성립된 사건, 직권조정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확정된 사건, 조정불성립결정 또는 취하되었으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으로 피해구제가 된 사건을 합하여 그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2023년 피해구제율은 74.1%로 전년의 67.6%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조정성립률이 전년 대비 상당히 높아졌고, 피해를 구제받고 취하한 사건 비율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9.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현황

(2021. 1. 1. ~ 2023. 12. 31.)

연도	구분 청구건수 (A)	기각, 각하 건수 (B)	청구요건 적합건수 (A-B)	피해구제건수 (C)	피해구제율 C/(A-B)
2021	4,278	728	3,550	2,225	62.7%
2022	3,175	643	2,532	1,712	67.6%
2023	4,085	258	3,827	2,835	74.1%

3

청구권별 처리결과

가. 개요

각 청구권별 조정성립률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 41%, 반론보도청구 43.4%, 추후보도청구 10.1%, 손해배상청구 36.3%로, 추후보도청구를 제외하면 전년과 비교해 모두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보도청구의 경우 조정성립률 자체는 작년보다 낮아졌으나 피해구제로 취하된 비율이 63.6%로 작년보다 2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추후보도청구 심리가 열리기 전 피신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전에 신청인측과 합의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위원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은 비율은 궁극적으로는 높아졌다고 분석할 수 있다.

기각 및 각하 처리된 사건의 비율은 전년보다 대폭 감소했는데, 이는 2022년도에 모 단체 등의 다량 신청 사건으로 인해 기각 및 각하 사건이 일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표 10. 청구권별 처리결과

(2023. 1. 1. ~ 2023. 12. 31.)

청구명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정정	1,943 (100)	796 (41)	53 (2.7)	382 (19.7)	74 (3.8)	31 (1.6)	523 (26.9)	84 (4.3)
반론	731 (100)	317 (43.4)	17 (2.3)	138 (18.9)	10 (1.4)	6 (0.8)	195 (26.7)	48 (6.6)
추후	99 (100)	10 (10.1)	0 (0)	3 (3.0)	5 (5.1)	17 (17.2)	63 (63.6)	1 (1)
손배	1,312 (100)	476 (36.3)	25 (1.9)	270 (20.6)	56 (4.3)	59 (4.5)	371 (28.3)	55 (4.2)
계	4,085 (100)	1,599 (39.1)	95 (2.3)	793 (19.4)	145 (3.5)	113 (2.8)	1,152 (28.2)	188 (4.6)

* ()안의 숫자는 %

사례 1. 정정보도

A언론사는 모 조합장이 조합원이나 이사회 보고 없이 거액의 공탁금을 집행하고, 수백억의 특별성
과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적합한 회계
감사를 거쳐 공탁금을 집행하였고 수백억원의 특별성과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며 정정보도를 청
구했다.

심리결과, A언론사가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2. 반론보도

B언론사는 신청인 조합장이 이사회에서 의결된 평가 기준을 임의로 수정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기준을 수정한 것이고,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한 것이라면서 반론
보도를 청구했다.

심리결과, B언론사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3. 추후보도

C언론사는 신청인 남편이 직원과 다투다 흥기를 휘둘러 양 측이 모두 사망했다는 소식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자신의 남편은 살인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고, 상대방인 직원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추후보도를 청구했다. 심리결과, C언론사가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4. 손해배상

D언론사는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동생인 신청인이 암호화폐 회사의 사장인 것으로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의 피해가 인정되는 점, 언론사가 신청인의 요구를 받고 즉시 기사를 수정한 점을 감안하여 D언론사가 손해배상금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5.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E언론사는 학회장으로 있는 신청인이 학회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은 사퇴의사를 밝힌바가 없다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E언론사가 기존 기사를 열람차단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후 손해배상금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① 처리현황

2023년 손해배상청구 1,312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성립 476건(36.3%), 직권조정결정 25건(1.9%), 조정불성립결정 270건(20.6%), 기각 56건(4.3%), 각하 59건(4.5%), 취하 426건(32.5%)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서는 손해배상청구 건의 조정성립 건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이는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 모든 청구권별 조정성립 건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정보도 등이 이루어져 피해구제로 종결된 취하 사건 수는 전년 대비 120건 증가했으며, 기각 처리된 사건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표 1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2021. 1. 1. ~ 2023. 12. 31.)

구분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21	1,372 (100.0)	363 (26.5)	45 (3.3)	26 (1.9)	326 [6] (23.8)	237 (17.3)	39 (2.8)	226 (16.5)	110 (8.0)
2022	1,009 (100.0)	251 (24.9)	18 (1.8)	13 (1.3)	226 [5] (22.4)	146 (14.5)	70 (6.9)	251 (24.9)	34 (3.4)
2023	1,312 (100.0)	476 (36.3)	15 (1.1)	10 (0.8)	270 [8] (20.6)	56 (4.3)	59 (4.5)	371 (28.3)	55 (4.2)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 된 건수

* () 안의 숫자는 %

1,312건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실제 금전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28건(2.1%)으로 전년 18건(1.8%)에 비해 증가하였다. 다만, 금전배상을 포함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조정대상 기사의 수정 및 열람 차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구제된 경우를 더하면,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피해 구제된 조정사건 수의 비율은 약 66%로 나타났다.

표 1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

(2021. 1. 1. ~ 2023. 12. 31.)

연도	청구건수	금전배상 인용건수	인용률[%]
2021	1,372	74	5.4%
2022	1,009	18	1.8%
2023	1,312	28	2.1%

② 청구액 및 조정액

2023년 손해배상청구 최고액은 2,200억 원, 최저액은 50원이었으며, 조정 최고액은 500만 원, 최저액은 30만 원이었다.

2023년 손해배상 인용빈도는 전년도 18건에서 28건으로 증가했다. 인용 최고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평균 인용액도 1,660,870원으로 전년 대비 약 90만원 가량 감소했다.

2023년 손해배상 최고 인용액은 500만 원이었다. 신청인은 사기 사건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피의자의 친동생으로, 신청인의 어린 시절 사진이 해당 피의자의 사진으로 보도돼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심리 결과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였다.

사례 6. 손해배상 최고 인용 사례

F언론사는 전국적 관심을 받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어린 시절 사진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여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고,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신청인과 관계없는 명예훼손성 기사에 신청인의 초상이 동의 없이 공개된 점이 인정되어 F언론사가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표 13.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

(2021. 1. 1. ~ 2023. 12. 31. / 단위 : 원)

연도 \ 구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2021	10	5,000,000,000	75,435,806	15,000,000
2022	1	220,000,000,000	372,306,712	20,000,000
2023	50	220,000,000,000	8,464,004,574	20,000,000

표 14.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021. 1. 1. ~ 2023. 12. 31. / 단위 : 원)

연도 \ 구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2021	60,000	15,000,000	2,085,000	1,000,000
2022	500,000	10,000,000	2,592,857	2,000,000
2023	300,000	5,000,000	1,660,870	1,000,000

표 15.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23. 1. 1. ~ 2023. 12. 31. / 단위 : 원)

침해유형 \ 조정액	인용빈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19	500,000	4,500,000	1,833,333	1,500,000	1,000,000
초상권 침해	6	300,000	5,000,000	1,920,000	1,000,000	300,000
음성권 침해	1	300,000	300,000	300,000	300,000	
기타	2	300,000	500,000	400,000	400,000	

③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침해 유형별로 2023년 전체 손해배상청구 건을 살펴보면, 명예훼손 사건이 1,279건(97.5%)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상권 침해 19건(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침해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전체 1,279건의 1.5%인 19건만이 금액 지급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되는데 반해, 명예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은 전체 33건의 27%인 9건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이 인용되었다.

이를 전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피해구제율(66%)과 비교해 분석하면, 실제 조정 절차에서 명예훼손 사건들은 신청인이 원하는 방식의 정정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권리침해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는 초상권, 성명권 침해 등의 사건들은 손해배상금 지급이 인용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음성권 침해 사례로는 회사 관련 언론대응을 하던 신청인의 통화 내용이 사전 동의 없이 방송에 노출돼,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가 있었다.

사례 7. 음성권 침해 손해배상

G언론사는 신청인이 재직 중인 회사 관련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신청인에게 통화를 요청했다. 이후 G언론사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음성이 녹취된 동영상을 방송했다. 이에 신청인은 녹취 자체 및 내용 공개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신청인의 음성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신청인의 음성을 삭제하고 손해배상금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표 16.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23. 1. 1. ~ 2023. 12. 31.)

구분 침해 유형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명예훼손	1,279 (100.0)	463 (36.2)	24 (1.9)	266 (20.8)	55 (4.3)	57 (4.5)	362 (28.3)	52 (4.1)
초상권	19 (100.0)	8 (42.1)	1 (5.3)	1 (5.3)			7 (36.8)	2 (10.5)
음성권	1 (100.0)	1 (100.0)						
성명권	3 (100.0)			1 (33.3)			1 (33.3)	1 (33.3)
프라이버시	2 (100.0)			2 (100.0)				
재산상손해	1 (100.0)	1 (100.0)						
기타	7 (100.0)	3 (42.9)			1 (14.3)	2 (28.6)	1 (14.3)	
계	1312 (100.0)	476 (36.3)	25 (1.9)	270 (20.6)	56 (4.3)	59 (4.5)	371 (28.3)	55 (4.2)

* () 안의 숫자는 %

4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매체 유형별 조정성립률은 주간신문(51.5%), 방송(50.7%), 일간신문(50.3%) 등 전년과 동일하게 온라인 매체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취하된 사건 가운데 피해구제된 비율은 온라인 매체인 뉴스통신(36.2%), 인터넷신문(32.3%), 인터넷뉴스서비스(27.1%)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들이 보도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기사의 열람 차단, 일부 열람차단과 같은 신속한 조치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피신청인은 온라인 매체 특성상 신청인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수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17.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023. 1. 1. ~ 2023. 12. 31.)

매체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일간 신문		388	195	4	97	9	3	60	20
		(100.0)	(50.3)	(1.0)	(25.0)	(2.3)	(0.8)	(15.5)	(5.2)
주간 신문		99	51	5	27			13	3
		(100.0)	(51.5)	(5.1)	(27.3)			(13.1)	(3.0)
방 송		345	175	15	77	11	3	50	14
		(100.0)	(50.7)	(4.3)	(22.3)	(3.2)	(0.9)	(14.5)	(4.1)
잡 지		8	2	2	2			2	
		(100.0)	(25.0)	(25.0)	(25.0)			(25.0)	
뉴스통신		218	69	5	30	13	9	79	13
		(100.0)	(31.7)	(2.3)	(13.8)	(6.0)	(4.1)	(36.2)	(6.0)
인터넷신문		2,491	894	51	468	66	86	804	122
		(100.0)	(35.9)	(2.0)	(18.8)	(2.6)	(3.5)	(32.3)	(4.9)
인터넷뉴스 서비스		498	212	12	80	34	10	135	15
		(100.0)	(42.6)	(2.4)	(16.1)	(6.8)	(2.0)	(27.1)	(3.0)
기 타		38	1	1	12	12	2	9	1
		(100.0)	(2.6)	(2.6)	(31.6)	(31.6)	(5.3)	(23.7)	(2.6)
계		4,085	1,599	95	793	145	113	1,152	188
		(100.0)	(39.1)	(2.3)	(19.4)	(3.5)	(2.8)	(28.2)	(4.6)

* ()안의 숫자는 %

5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전체 4,085건의 사건 중 대다수는 명예훼손 사건으로 4,042건(전체 사건의 98.9%)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585건(39.2%)이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다. 이는 작년 명예훼손 사건의 조정성립 비율인 29.9%(924건)에 비해 9.3% 상승한 수치다. 명예훼손 사건의 조정성립 외 처리결과는 피해구제 되어 취하된 사건 1,141건(28.2%), 조정불성립 사건 788건(19.5%), 미구제 취하 185건(4.6%), 기각 140건(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23. 1. 1. ~ 2023. 12. 31.)

구분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명예훼손	4,042	1,585	93	788	140	110	1,141	185
	(100)	(39.2)	(2.3)	(19.5)	(3.5)	(2.7)	(28.2)	(4.6)
초상권 침해	21	8	1	2			8	2
	(100)	(38.1)	(4.8)	(9.5)			(38.1)	(9.5)
음성권 침해	1	1						
	(100)	(100)						
성명권 침해	3			1			1	1
	(100)			(33.3)			(33.3)	(33.3)
사생활 침해	3		1	2				
	(100)		(33.3)	(66.7)				
재산상 손해	4	2			2			
	(100)	(50.0)			(50.0)			
기타	11	3			3	3	2	
	(100)	(27.3)			(27.3)	(27.3)	(18.2)	
계	4,085	1,599	95	793	145	113	1,152	188
	(100)	(39.1)	(2.3)	(19.4)	(3.5)	(2.8)	(28.2)	(4.6)

* () 안의 숫자는 %

사례 8. 명예훼손

H언론사는 동물보호단체들이 유기견을 입양하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서 신청인 단체가 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현재 혐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신청인 단체가 특정될 가능성이 높게 보도되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H언론사가 제목에서 자극적인 표현을 삭제하고, 신청인 측 반론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9. 프라이버시

J언론사는 무인가 신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해당 학교의 소재 지역, 졸업사진, 제보자인 신청인이 신학교에서 겪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신청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의도하지 않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J언론사가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기사를 수정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측 모두 결정에 동의하였다.

사례 10. 저작권 침해

J언론사는 지역 간 복선전철이 KTX-이음 열차로 운용될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자료화면으로 신청인이 제작한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송출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본인이 제작한 영상이 사전협의나 인용표시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영상 사용료 명목으로 J언론사가 신청인에게 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도에서 신청인의 영상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6 신청인 유형별 처리 결과

전체 사건 중 개인이 청구한 비율이 '21년 60.1%, '22년 53.5%, '23년 54.5%로 지속적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청구 사건 2,225건 중 733건(32.9%)이 조정성립되었고, 689건(31.0%)이 열람차단 및 보도게재 등으로 피해구제 되어 취하되었으며, 470건(21.1%)이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처리건수는 정치인, 개인사업가, 회사원, 연예인 등의 순이었고 조정성립율은 전문직 종사자(84.5%), 교육자(51.3%), 고위공무원 및 조합대표(50.0%) 등의 순이었다.

단체 유형별 조정성립율은 국가기관(53.2%), 일반단체(51.7%), 지자체 및 기업체(각 4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9.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개인)

(2023. 1. 1. ~ 2023. 12. 31.)

신청인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정치인	414	139	14	142	1		105	13
	(100.0)	(33.6)	(3.4)	(34.3)	(0.2)		(25.4)	(3.1)
공공기관장	62	16		14			17	15
	(100.0)	(25.8)		(22.6)			(27.4)	(24.2)
고위공무원	14	7		2				5
	(100.0)	(50.0)		(14.3)				(35.7)
공무원	83	25		29			24	5
	(100.0)	(30.1)		(34.9)			(28.9)	(6.0)
전문직 종사자	103	87	1	7			7	1
	(100.0)	(84.5)	(1.0)	(6.8)			(6.8)	(1.0)
문화예술인	21	5		9		1	5	1
	(100.0)	(23.8)		(42.9)		(4.8)	(23.8)	(4.8)
종교인	15	6	4	2			3	
	(100.0)	(40.0)	(26.7)	(13.3)			(20.0)	
회사원	337	142		32	4	32	113	14
	(100.0)	(42.1)		(9.5)	(1.2)	(9.5)	(33.5)	(4.2)
언론인	176	32		22	74		45	3
	(100.0)	(18.2)		(12.5)	(42.0)		(25.6)	(1.7)
교육자	78	40		9	4		23	2
	(100.0)	(51.3)		(11.5)	(5.1)		(29.5)	(2.6)
개인사업가	407	103	11	34	6	46	198	9
	(100.0)	(25.3)	(2.7)	(8.4)	(1.5)	(11.3)	(48.6)	(2.2)
연예인	128	13		105			8	2
	(100.0)	(10.2)		(82.0)			(6.3)	(1.6)
학생	63	11		2	2		48	
	(100.0)	(17.5)		(3.2)	(3.2)		(76.2)	
시민활동가	53	20		18	1		12	2
	(100.0)	(37.7)		(34.0)	(1.9)		(22.6)	(3.8)

구분 신청인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조합대표 (협회장)	54	27	6	7			5	9
	(100.0)	(50.0)	(11.1)	(13.0)			(9.3)	(16.7)
기타	217	60	11	36	22	2	76	10
	(100.0)	(27.6)	(5.1)	(16.6)	(10.1)	(0.9)	(35.0)	(4.6)
계	2,225	733	47	470	114	81	689	91
	(100.0)	(32.9)	(2.1)	(21.1)	(5.1)	(3.6)	(31.0)	(4.1)

* ()안의 숫자는 %

표 20.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단체)

(2023. 1. 1. ~ 2023. 12. 31.)

구분 신청인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국가기관	77	41	4	23			9	
	(100)	(53.2)	(5.2)	(29.9)			(11.7)	
지자체	154	72	11	21			46	4
	(100)	(46.8)	(7.1)	(13.6)			(29.9)	(2.6)
공공단체	101	31		22			30	18
	(100)	(30.7)		(21.8)			(29.7)	(17.8)
일반단체	536	277	8	122	6		111	12
	(100)	(51.7)	(1.5)	(22.8)	(1.1)		(20.7)	(2.2)
종교단체	46	18	8	10	1		6	3
	(100)	(39.1)	(17.4)	(21.7)	(2.2)		(13.0)	(6.5)
기업체	757	354	13	95	18	32	192	53
	(100)	(46.8)	(1.7)	(12.5)	(2.4)	(4.2)	(25.4)	(7.0)
언론사	141	64	1	11	6		58	1
	(100)	(45.4)	(0.7)	(7.8)	(4.3)		(41.1)	(0.7)
교육기관	48	9	3	19			11	6
	(100)	(18.8)	(6.3)	(39.6)			(22.9)	(12.5)

신청인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계	1,860	866	48	323	31	32	463	97
	(100)	(46.6)	(2.6)	(17.4)	(1.7)	(1.7)	(24.9)	(5.2)

* ()안의 숫자는 %

7

중재부별 처리결과

중재부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중재부가 전체 사건의 76.2%(3,114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재부 사건은 '21년 69.4%(2,969건), '22년 74.9%(2,377건)로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울중재부의 사건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38.5%(1,198건), 당사자간 협의나 화해가 이뤄져 취하로 피해 구제된 것이 28.4%(883건), 조정불성립 20.1%(6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 외 기각 4.4%(137건), 피해구제 없는 미구제 취하 3.7%(114건), 각하 3.4%(106건), 직권조정결정 1.6%(50건) 순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한편, 지역중재부(전체 사건의 23.8%, 971건)의 경우 서울중재부와 마찬가지로 조정성립으로 처리된 사건이 41.3%(401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구제된 취하 사건 27.7%(269건), 조정불성립 17.2%(167건) 순으로 서울중재부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 외 직권조정결정 4.6%(45건), 기각 0.8%(8건), 각하 0.7%(7건)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중재부별 처리결과

(2023. 1. 1. ~ 2023. 12. 31.)

중재부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서울	3,114	1,198	50	626	137	106	883	114
	(100.0)	(38.5)	(1.6)	(20.1)	(4.4)	(3.4)	(28.4)	(3.7)
부산	23	18		2		1	2	
	(100.0)	(78.3)		(8.7)		(4.3)	(8.7)	

중재부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취 하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구제	미구제
대구		123	51	2	30			15	25
		(100.0)	(41.5)	(1.6)	(24.4)			(12.2)	(20.3)
광주		117	73	21	11			6	6
		(100.0)	(62.4)	(17.9)	(9.4)			(5.1)	(5.1)
대전		67	6		8		6	45	2
		(100.0)	(9.0)		(11.9)		(9.0)	(67.2)	(3.0)
경기		357	118	10	77	7		123	22
		(100.0)	(33.1)	(2.8)	(21.6)	(2.0)		(34.5)	(6.2)
강원		33	11	4	13			5	
		(100.0)	(33.3)	(12.1)	(39.4)			(15.2)	
충북		82	16	4	12			42	8
		(100.0)	(19.5)	(4.9)	(14.6)			(51.2)	(9.8)
전북		98	74	1	6			9	8
		(100.0)	(75.5)	(1.0)	(6.1)			(9.2)	(8.2)
경남		58	24	3	8	1		20	2
		(100.0)	(41.4)	(5.2)	(13.8)	(1.7)		(34.5)	(3.4)
제주		13	10					2	1
		(100.0)	(76.9)					(15.4)	(7.7)
계		4,085	1,599	95	793	145	113	1,152	188
		(100)	(39.1)	(2.3)	(19.4)	(3.5)	(2.8)	(28.2)	(4.6)

* () 안의 숫자는 %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이용자의 뉴스 소비 형태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 뉴스를 주로 소비하던 전통적 형태에서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한 소비를 거쳐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및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한 뉴스 소비로 그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언론사들의 뉴스 콘텐츠 생산 방식 또한 이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다. 비단 기존 방송사들뿐만 아니라 신문사들 또한 자사의 SNS,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인쇄 작업을 통해 비교적 느린 속도로 생산·소비되던 텍스트 형태의 언론 보도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산·소비되는 형태의 보도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인격권 침해와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방안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언론조정 절차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언론사)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이용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개인 유튜브·일반 단체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뉴스 형태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신청인의 91.7%, 피신청인의 82.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인터넷 기사에 대한 수정/열람차단(삭제) 청구권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95.3%, 피신청인의 63.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현행 언론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전통적 피해구제 방식인 정정·반론·추후보도, 손해배상에 더해 기사 수정/삭제 청구권의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조정의 대상이 되는 '언론'의 개념을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피해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조정대상 매체 기준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조정 대상을 폭넓게 포섭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을 통해 뉴스 콘텐츠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유튜브 보도 또한 조정대상으로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유형의 언론 피해 또한 본격적으로 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2009년에 포털 등을 조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개정된 이후로 15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스마트폰의 보급, 유튜브를 필두로 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 확산 등 전반적 언론 환경은 2009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했다. 위원회의 실무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이 격변하는 언론 환경을 대변할 수 있게끔 개정되지 못한다면 실효적인 피해구제책 마련에는 현실적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는 동영상 플랫폼을 넘어 'chat 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검색엔진 기술의 발달, AI 기술 발전을 통한 AI 기자 보편화 등으로 미디어 환경의 구조가 또 다시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러한 기술 발전의 그늘로 ‘딥페이크’ 합성으로 인한 인격권 피해, AI 기자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 등 기존에 예상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유형의 언론 피해 또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이렇듯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인 언론피해구제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함과 동시에,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례 11.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1

K언론사는 불법 영업 홀덤펍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업체 내부를 자료화면으로 사용하였다. 신청인은 이로 인해 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점이 불법 도박과 관련된 것처럼 인식돼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K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를 열람 차단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게재된 보도 영상에 나온 신청인 업체의 표식들을 모두 불러 처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12.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2

L언론사는 신청인 기관이 유튜브 채널에 올린 공익 광고의 조회수가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고, 신청인 기관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신청인 기관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L언론사 홈페이지, L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네이버TV 등에 게재된 보도 영상의 설명란에도 함께 업로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제4절 | 평가

2023년 위원회는 전년 3,175건에서 크게 증가한 총 4,085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하였고, 조정사건의 피해구제를 또한 최근 5년간 피해구제율 중 가장 높은 수치(74.1%)를 기록하였다. 한편, 언론조정 절차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이용만족도조사 결과, 신청인 종합만족도 점수가 76.6점, 피신청인 종합만족도 점수가 75.8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 대비 신청인은 1.3점 하락하고, 피신청인은 1.0점 상승한 수치이다.

위원회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상승한 주요 원인은 미디어 환경의 다변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의 증가와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위 현상과 더불어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유사 보도가 다수 매체에 반복 게재되면서 동일 신청인이 다수의 언론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조정 신청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량 신청 사건은 사건 처리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만족도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2023년 12월말 기준 조정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약 21.5일로 전년도 평균 처리기간인 14.8일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중재부가 신속히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등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처리기한인 14일을 넘기고 있다는 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해마다 증가하는 조정사건의 신속한 사건 해결과 더불어 당사자의 실질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충실한 심리진행을 위해서 중재위원 정원 증원 및 중재부 증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중재부 증설을 포함해 다량 신청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실무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운영해 나가고자 한다.

지난해 해마다 늘어나는 유튜브 영상물 관련 피해구제를 위해 소위원회를 통해 유튜브 관련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실무적 처리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유튜브 등 온라인 뉴스플랫폼으로 인한 피해구제현황을 공유하고, 동영상 매체의 특성을 감안한 피해구제방법과 사례를 축적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외, 위원회는 언론중재법상의 추후보도청구 요건 판단과 실무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확정 전 판결 등에 대해서도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에서 무죄나 무혐의가 확인된다면 추후보도청구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과 관련한 행정처분 보도와 관련해서도 가급적 본안심리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이용만족도 향상과 피해구제 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시설을 개선하였다.

2024년 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국회 입법 상황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안 위주의 단계별 입법 추진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튜브 관련 피해구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다량 신청 사건의 효율적 처리 방안을 강구하는 등 미디어 특성에 부합하는 실효적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심리 절차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실질적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제2장

시정권고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23 Annual Report

제1절 | 개요

시정권고는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등 언론의 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침해 사항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로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32조에 따라 시정권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심의를 통한 법익 침해가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수정 혹은 삭제가 불가한 지면 매체에는 향후 유사한 보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수정 혹은 삭제가 가능한 인터넷 매체에는 언론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비식별처리, 수정, 삭제 등)를 침해 유형 별로 안내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시정권고 모니터링 매체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바탕으로 ①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시사성 기사가 전체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②법익 침해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 범위 및 정도(매체 인지도, 포털검색 제휴여부 등), ③정기적 발행 여부 및 기사 제공 빈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위원회는 매체의 심의 적합성을 반기별로 검토,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하여 게시하고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시정권고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고 있다.

시정권고는 이행을 강제하지 않는 권고적 성격의 조치로, 위원회는 시정권고제도를 통해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보호를 위해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법익 침해를 예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제2절 | 주요 추진실적

1 시정권고 현황

2023년 위원회는 총 2,716개의 매체를 모니터링 하여, 411개의 매체를 대상으로 1,158건의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1,158건의 시정권고 결정 중 기사의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한 인터넷 기반 매체를 대상으로 한 결정이 1,070건(92.4%)이었고, 이 중 언론사가 시정권고 결정을 수용하여 수정 혹은 삭제한 경우(이하 '시정권고 결정 수용률')는 697건으로 집계되어 65.1%로 나타났다.

한편, 2023년에는 시정권고심의 모니터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 2회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장애차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 감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표 22. 2023년도 시정권고 결정 수용률

(2023. 1. 1. ~ 12. 31.)

수용여부	수용		불수용	계
	수정	삭제		
결정건수(%)	441(41.2%)	256(23.9%)	373(34.9%)	1,070(100%)
	697(65.1%)			

2 침해 유형별 분석

2023년 시정권고 결정 현황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별 금지'가 286건(24.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사생활 보호 등' 270건(23.3%), '자살 관련 보도' 208건(18.0%), 기사형 광고 126건(10.9%), 충격·혐오감 78건(6.7%), 아동학대사건보도 54건(4.7%) 등의 순이었다. 작년 대비 '차별 금지'에 대한 시정 권고 결정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2022년 차별 표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이래 언론계의 문제의식을 제고하고 자정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다.

표 23.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21. 1. 1. ~ 2023. 12. 31.)

침해 유형	개인적 법익 침해금지							사회적 법익 침해금지										국가적 법익 침해	
	사생활 보호 등	명예 훼손 금지	범죄 사건 보도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의 보호	아동학대 사건 보도	신고자 등 보호	보도 윤리	차별 금지	재난 보도	범죄 묘사	성 관련 보도	자살 관련 보도	미약 및 약물 보도	폭력 묘사	충격 혐오감	여론 조사 보도		기사형 광고
2021	1,291 (100)	517 (40.0)		101 (7.8)	70 (5.4)	1 (0.1)			4 (0.3)		29 (2.3)	34 (2.6)	156 (12.1)	47 (3.6)	29 (2.3)	31 (2.4)	39 (3.0)	182 (14.1)	51 (4.0)
2022	1,239 (100)	514 (41.5)	19 (1.5)	56 (4.5)	21 (1.7)		12 (1.0)	52 (4.2)	50 (4.0)	20 (1.6)	41 (3.3)	21 (1.7)	108 (8.7)	8 (0.6)	16 (1.3)	33 (2.7)		209 (16.9)	59 (4.8)
2023	1,158 (100)	270 (23.3)		45 (3.9)			54 (4.7)		286 (24.7)		27 (2.3)	9 (0.8)	208 (18.0)	35 (3.0)	1 (0.1)	78 (6.7)		126 (10.9)	19 (1.6)

* ()안의 숫자는 %

가. 사생활 보호 등

2023년 ‘사생활 보호 등’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 결정은 총 270건으로, 전체의 23.3%이다. 위원회는 공적 인물,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인(私人)인 가족의 초상 등을 공표한 보도, 사건·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인물의 초상, 성명, 사생활 등을 과도하게 공개한 보도 등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대표적으로 한 연예에는 프로그램 방송 후 출연자 간 불거진 사생활 폭로 양상에 대한 보도에서, 출연자가 폭로한 사적 통신 내용을 매체가 여과 없이 공개한 사례가 있었다. 위원회는 폭로 속 당사자가 스스로 방송에 출연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볼 수는 없으며, 명백히 사생활에 관한 내용인 통신내역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나. 아동학대사건 보도

2023년 ‘아동학대사건 보도’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 결정은 총 54건으로, 전체의 4.7%이다. ‘아동학대사건 보도’는 2021년 신설된 시정권고 심의 조항으로, 소년보호사건, 아동·청소년 성보호사건, 성폭력범죄 사건 외의 일반적 아동 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및 관련자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됐다. 위원회는 아동 학대 의혹을 받는 장면을 여과 없이 보도하여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보도 등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대표적으로 의붓딸에게 과도하게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으로 논란이 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보도하면서, 다수의 시청자들로부터 성추행 등의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된 영상을 공표한 사례가 있었다. 문제

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위원회는 해당 장면을 재공표하는 것이 공익 목적 달성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학대 의혹을 받는 아동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할 때, 그 정황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것은 해당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사례. 사생활 보호 등

[SC이슈] "여자 3명과 잤다"..."나는솔로" [] 영숙, 상철 '19금문자' 여성편력 폭로


나는 솔로 [] 영숙이 상철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 상철을 공개 자각했다.

영숙은 20일 자신의 개인계정에 "눈은 저질 따국인 놀이. 순진한 척 그만하고, 카톡 확인기 해서 날 모함하지 않았으면 내가 오곤 안했지. 덕분에 정보 받은 거 같 오곤했고 너무 더럽고 소름끼쳐서 디포문 내용공개하여 상철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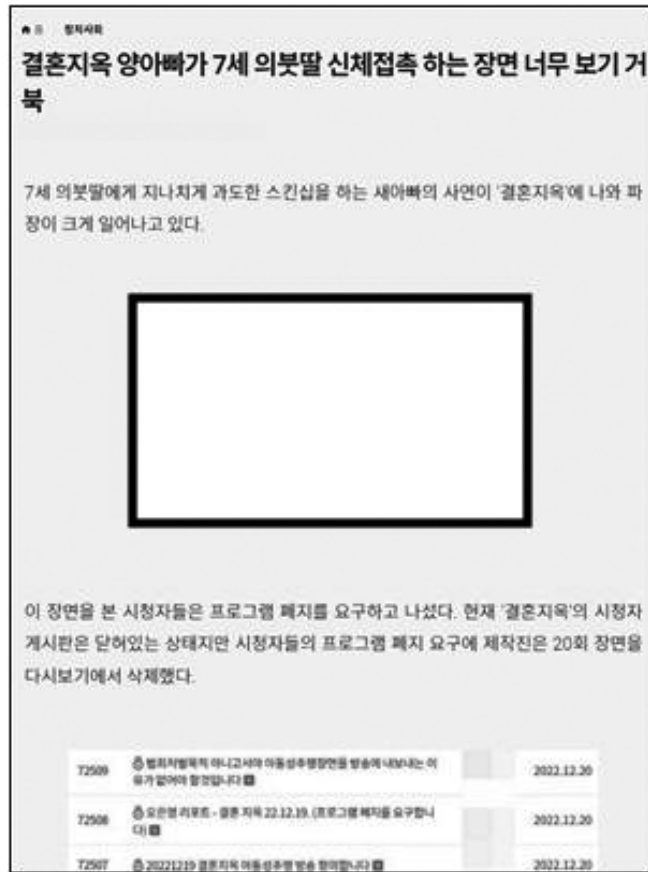
우선 영숙이 방송에서 상철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가 공개됐다. 상철은 영숙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이 문제로 전남편과 완전한 연을 끊을 수 없는 영숙의 상황 때문에 힘든 마음을 수차례 토로했고, 영숙은 '아이 없는 다른 사람 만나라며 이별을 고했다. 여기까지는 방송에도 나왔던 부분.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40여장에 달하는 법치분에 따르면 상철은 영숙에게 일명 '19금 율리랑'을 했다. '너와 관계하는 정면을 상상한다' '백시하다'며 노골적으로 대서했고, 자신의 과거 성행위과 이상 교제 경험까지 공개했다. 영숙은 '정신 차려라'라며 선을 긋기도 했지만, 상철은 '미국에서는 그렇다며 19금 드립을 떨치지 않았다.



- ☑ 한 연애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갈등에 대해 보도하면서, 출연자가 폭로한 통신 내역을 여과 없이 공표
- ☑ 원 보도에는 블라인드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



- ☑ 의붓딸에게 과도하게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으로 논란이 된 방송프로그램을 보도하면서, 해당 장면을 공표
- ☑ 원 보도에는 블라인드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

다. 차별 금지

2023년 ‘차별 금지’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 결정은 총 286건으로, 전체의 24.7%이다. 이는 2022년 의 50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이중 상당수는 기사 제목에 ‘눈먼 돈’, ‘장애를 앓다’ ‘결정 장애’, ‘절름발이 제도’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였다. 위원회는 시정권고를 통해 언론 보도에서 관용적으로 언급되는 장애 차별적 표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사례3. 차별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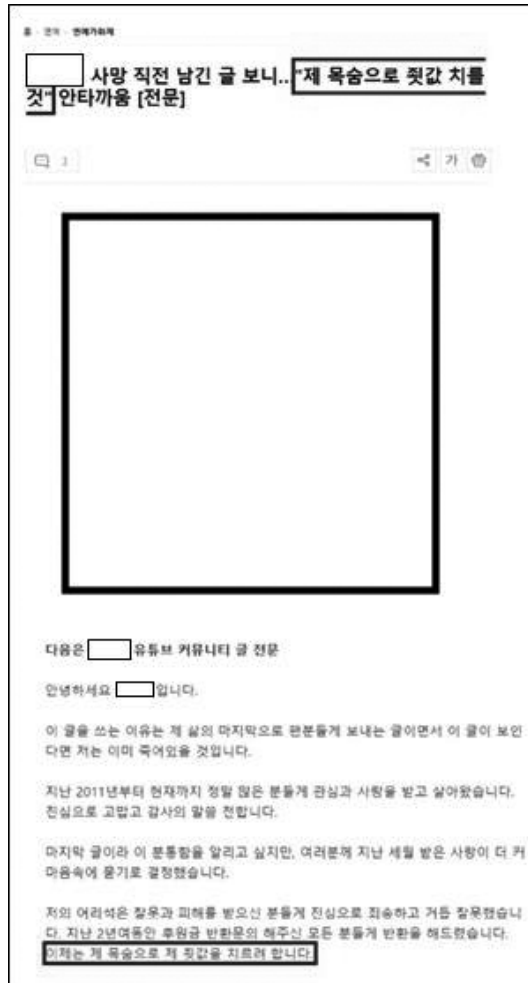


☞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여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라. 자살 보도

2023년 '자살 관련 보도'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 결정은 총 208건으로, 전체의 18.0%이다. 이는 2022년의 108건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결과이며, 이 중 상당수는 공직자나 유명인의 자살에 관한 보도였다. 위원회는 자살자의 신상 정보, 사생활 등을 공표한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또한 유명인의 자살이 자살 위기에 노출된 일부 독자들에게 모방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살의 동기를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한 보도,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한 보도, 자살을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보도 등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하였다.

사례4. 자살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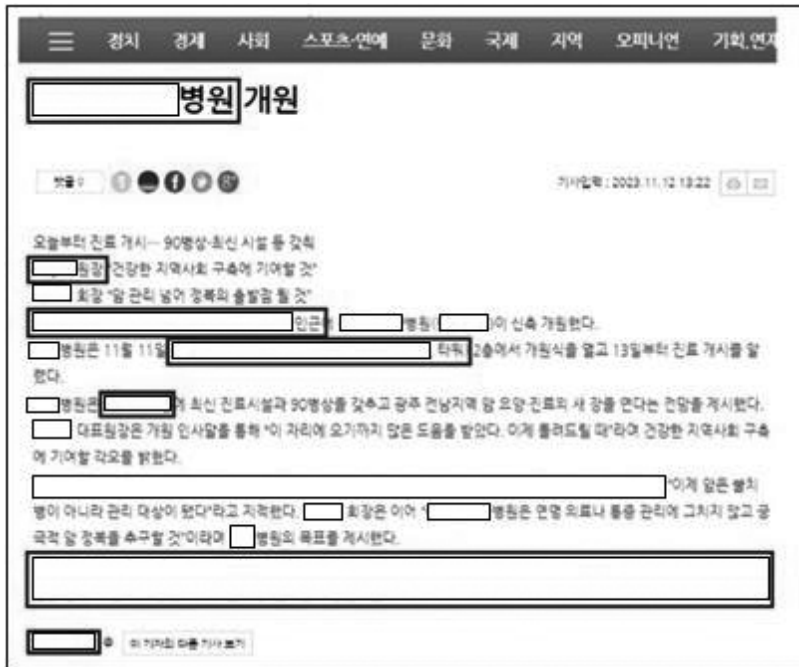


- ☑ 유명 가수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가수가 온라인에 남긴 유서 성격 게시물 속 특정 문구를 여과 없이 공표. 해당 문구는 당사자가 속죄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한 것처럼 자살을 미화하거나,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
- ☑ 원 보도에는 블라인드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

마. 기사형 광고

2023년 '기사형 광고'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 결정은 총 126건, 전체의 10.9%로 2022년의 209건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결과이다.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을 경우, 독자들은 해당 광고에 대해 기사에 준하는 신뢰를 가지게 되어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오인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 관련 기사형 광고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과장된 정보를 사실로 오인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위원회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바이라인과 함께 기사형식으로 보도하는 경우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사례5. 기사형 광고



- ☑ 모 병원의 개원 정보를 기사 형식으로 보도
- ☑ 원 보도에는 블라인드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

3 매체 유형별 분석

2023년 시정권고 결정 현황을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신문이 1,007건(87.0%)으로 가장 많았고, 일간지 83건(7.2%), 뉴스통신 63건(5.4%) 순이었다. 최근 3년간의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결정 통계에 의하면, 인터넷 기반 매체(뉴스통신, 인터넷 신문)의 비율이 계속해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인쇄 매체는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 기반 매체는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확산시키는 반면 기사의 수정 및 삭제가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다. 법익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인터넷 기반 매체에 언론사가 취할 수 있는 자발적 조치(비 식별처리, 수정, 삭제 등)를 안내하며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인터넷 기반 매체의 시정 권고 수용률은 65.1%(2023년 기준)정도로, 관련 조치(비 식별처리, 수정, 삭제 등)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보도의 공유 등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

표 24.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21. 1. 1. ~ 2023. 12. 31.)

구분 연도	총계	매체 유형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방송
		중앙 일간지	지역 일간지					
2021	1,291 (100)	8 (0.6)	32 (2.5)	2 (0.2)	1 (0.1)	73 (5.6)	1,172 (90.8)	3 (0.2)
2022	1,239 (100)	21 (1.7)	44 (3.6)	3 (0.2)		81 (6.5)	1,083 (87.4)	7 (0.6)
2023	1,158 (100)	29 (2.5)	54 (4.7)	5 (0.4)		63 (5.4)	1,007 (87)	

4 법익 침해 반복 언론사에 대한 조치

2023년 시정권고 결정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0개 매체는 인터넷 신문 9곳, 뉴스 통신 1곳이다. 상위 10개 매체가 받은 시정권고 결정은 총 221건으로, 전체 결정건수인 1,158건의 19.0%에 해당한다. 한 해 동안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전체 매체가 411곳임을 감안할 때, 상위 10개 매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위원회는 법익 침해를 반복하는 언론사에 반기별로 시정권고 세부 내용을 고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언론사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제3절 | 평가

2023년 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건수는 1,158건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 중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건수가 1,070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매체의 속성상 여러 언론사들이 유사한 내용을 경쟁적으로 보도하여 법익침해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심의로 급변하는 언론환경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2023년에는 특히 차별적 표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장애 또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표현하는 경우 등에 대해 꾸준히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의 관점에서 관련 심의기준을 점검하고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으며, 향후에도 장애인 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 부처의 보도 가이드라인을 심의 기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시정권고 결정에 따라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비율, 즉 수용률은 65.1%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시정권고의 취지와 근거를 언론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 위반유형 안내문을 함께 송부하고 있으며, 침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언론 사별, 침해유형별 수용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도 운영을 위한 분석의 기준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법익침해와 관련한 이슈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재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엄격하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시정권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실무진의 심의역량을 강화하며 유관기관의 심의 사례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시정권고 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제3장

선거기사심의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23 Annual Report

제1절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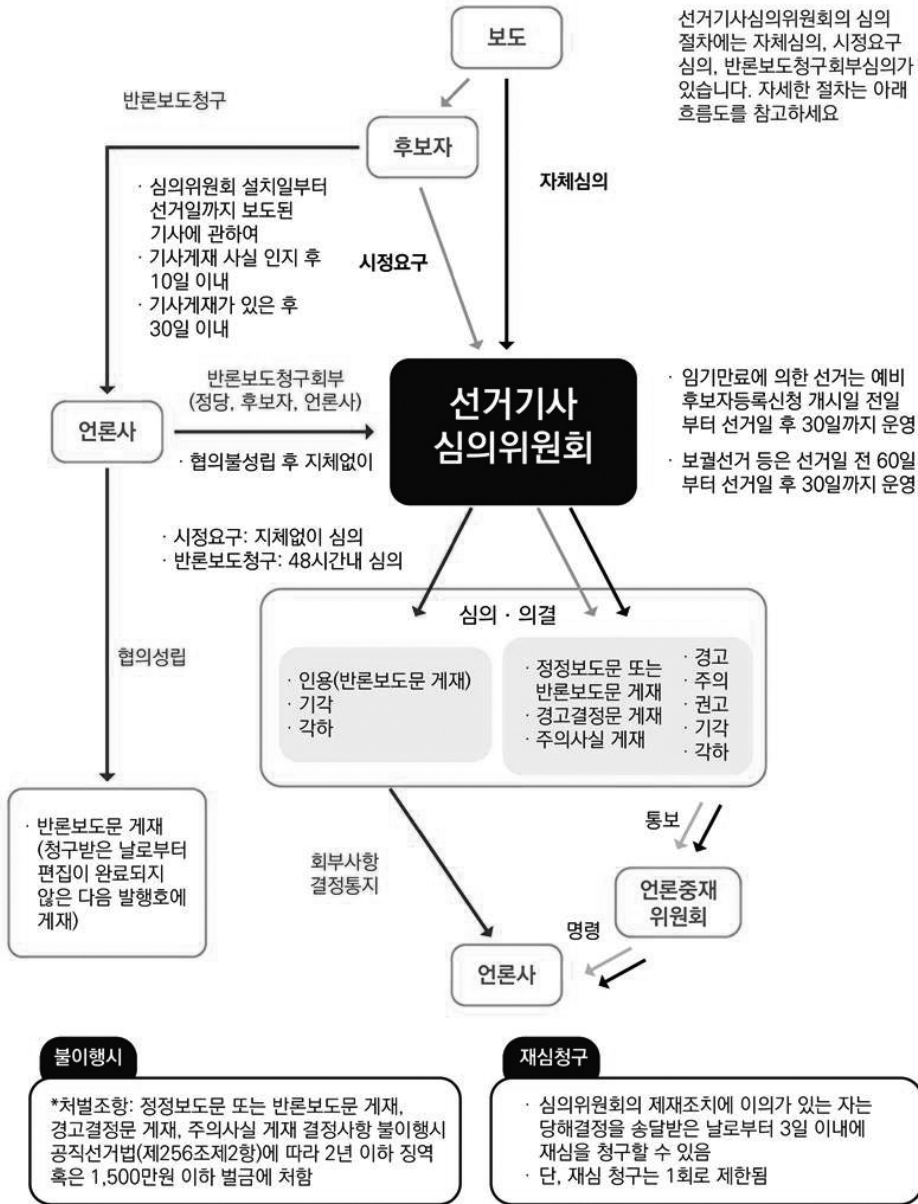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법정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이하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사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심의유형은 자체심의, 시정요구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자체심의를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선심위가 해당 선거기사의 불공정 여부를 최종 판단하며, 시정요구심의를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은 후보자(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시정을 요구한 안건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언론사에 게재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사의 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 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청구인과 언론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나 언론사는 이를 선심위에 회부할 수 있다.

선심위는 위 세 가지 유형의 심의를 거친 모든 결정 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재조치가 결정된 언론사에 선심위 결정 사항의 이행을 명하고, 언론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재·보궐선거 선심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공정한 선거보도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심의대상매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심의인력 간 업무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실무적으로 체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선거기사심의팀이 시정권고제도와 선거기사심의제도 교육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심의 제도를 알리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였다.

■ 심의절차



제2절 | 주요 추진실적

1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가. 설치·운영

위원회는 2023년 4월 5일 실시된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위하여 2023년 2월 4일부터 2023년 5월 5일까지 약 3개월간 선심위를 운영하였다.

표 25.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구분	성명	주요이력	추천기관
위원장	김선중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최수호	YTN 해설위원실장(국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김지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박정민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	국민의힘
	이은식	총북 선관위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진성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법학회
	김대광	법무법인 선경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지해범	조선일보 베이징특파원 및 국제부장	한국신문협회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는 「공직선거법」상 추천단체 순서에 따름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식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구(총 9곳)

국회의원	1	전북 전주시울
지방자치 단체의 장	1	경남 창녕군수
지방의회 의원	6	경북 구미시, 경남 창녕군, 울산 남구, 충북 청주상당구, 전북 군산시, 경북 포항북구
교육감	1	울산 교육감

나. 심의·의결현황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는 총 141개(중앙일간지 22개, 지역일간지 51개, 중앙주간지 29개, 지역주간지 18개, 월간지 9개, 뉴스통신 12개)의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선거보도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위반 여부를 자체 심의하여 총 7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하였다.

자체심의 안건 7건 가운데, 경고 2건(28.6%), 주의 5건(71.4%)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건(85.7%),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위반이 1건(14.3%)이었으며, 보도 유형별로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및 기고문 4건(57.1%), 일반 선거기사 2건(28.6%),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보도가 1건(14.3%)을 차지하였다.

한편 매체유형을 분석한 결과, 자체심의 안건 7건(100%) 모두 지역일간지였다. 이는 선거가 열리는 지역에 따라 관심의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재·보궐선거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7건의 자체심의 의결 중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으며, 후보자의 시정요구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표 26.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의결현황

자체심의 (2023. 2. 4~2023. 5. 5.)

간별	의결 건수	위반유형 (일반 심의기준)			보도유형 (세부 심의기준)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반 선거 기사	여론 조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진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안내문 송부
지역 일간지	7 (100)	6 (85.7)	1 (14.3)	0 (0.0)	2 (28.6)	1 (14.3)	0 (0.0)	0 (0.0)	4 (57.1)	0 (0.0)	0 (0.0)	0 (0.0)	2 (28.6)	5 (71.4)	0 (0.0)	0 (0.0)
계	7 (100)	6 (85.7)	1 (14.3)	0 (0.0)	2 (28.6)	1 (14.3)	0 (0.0)	0 (0.0)	4 (57.1)	0 (0.0)	0 (0.0)	0 (0.0)	2 (28.6)	5 (71.4)	0 (0.0)	0 (0.0)

가. 설치·운영

위원회는 2023년 10월 11일 실시된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위하여 2023년 8월 12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약 3개월간 선심위를 운영하였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곳은 ‘서울 강서구청장’이 유일했는데, 이는 재·보궐선거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단 한 곳에서만 선거가 실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다. 다만 보궐선거 실시 사유(피선거권상실)를 둘러싼 정치권의 분쟁이 격화된 점, 해당 선거를 다가오는 제22대 국선의 ‘바로미터’로 보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점 등에서 결코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었다.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분	성명	주요이력	추천기관
위원장	심창섭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식	충북 선관위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최용근	법무법인 한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김대회	공정언론국민연대 감사	국민의힘
	홍중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교수	한국언론학회
	김동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대한변호사협회
	문현숙	한겨레신문사 선임기자	한국기자협회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연대국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문한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 「공직선거법」상 추천단체 순서에 따름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식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구(1곳)

지방자치 단체의 장	1	서울 강서구청장
------------	---	----------

나. 심의·의결현황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는 총 90개(중앙일간지 22개, 지역일간지 20개, 중앙주간지 27개, 지역주간지 1개, 월간지 8개, 뉴스통신 12개)의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선거보도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위반 여부를 자체 심의하여 총 3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하였다.

자체심의 안건 3건 가운데, 주의 2건(66.7%), 권고 1건(33.3%)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3건 모두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을 위반하였으며, 보도 유형별로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및 기고문이 2건(66.7%), 일반 선거기사가 1건(33.3%)을 차지하였다.

한편, 매체 유형별로는 뉴스통신이 2건(66.7%)이었고, 지역일간지가 1건(33.3%)이었다.

3건의 자체심의 의결 중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으며, 후보자의 시정요구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표 27.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의결현황

자체심의 (2023. 8. 12. ~ 2023. 11. 10.)

간별	의결 건수	위반유형 (일반 심의기준)			보도유형 (세부 심의기준)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반 선거 기사	여론 조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진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안내문 송부
지역 일간지	1 (100)	1 (100)						1 (100)						1 (100)		
뉴스 통신	2 (100)	2 (100)			1 (50.0)			1 (50.0)						1 (50.0)	1 (50.0)	
계	3 (100)	3 (100)			1 (33.3)			2 (66.7)						2 (66.7)	1 (33.3)	

3 선심위 운영의 체계성·전문성 제고

위원회는 두 차례 재·보궐선거 선심위를 운영함에 있어 선거의 종류(교육감, 국회의원 등) 및 선거구별 특징을 고려하여 심의대상매체를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선거보도가 전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게재 시기와 빈도 등을 비교·분석하여 효율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모니터링 전문 심의인력을 상반기에 2명, 하반기에 1명 채용하여 과거 선심위 결정 사례와 타 심의기구(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결정 현황 등을 참고하도록 하여 심의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특히 하반기에 채용한 모니터링 요원의 경우, 2024년 실시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니터링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기 선거에 있어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 심의제도 교육 및 홍보 강화

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 제도에 대한 교육 수요를 파악, 주요 사례들을 담은 콘텐츠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2024년 실시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불공정 선거보도를 예방하기 위해 언론인 등을 상대로 전문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최근 선거(대선, 지선 등)를 치르며 축적된 심의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 내용이 참석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었다.

알기쉬운 선거기사 가이드북



또한 위원회는 두 차례 재·보궐선거 선심위 출범에 맞추어 각각 보도자료를 배포함과 더불어, 심의대상매체에 공정한 선거보도를 당부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과 함께 <알기쉬운 선거기사 가이드북> 책자를 발송함으로써 선거기사 심의기준을 사전에 안내하고 언론사의 부주의로 심의기준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등 대외적으로 위원회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선심위의 존재를 홍보하고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제3절 | 평가

위원회는 2023년 두 차례의 재·보궐선거의 선심위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비록 지난 해 있었던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비해 선거의 규모나 국민적 관심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반감된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그 경중을 가리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심위를 운영하며 전문성과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를 통해 총 7건을 심의·의결하였고,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에서는 총 3건의 의결 건수를 기록하였다. 특히 칼럼 및 기고문을 통해 특정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담아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가 60%(6건)에 달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칼럼 및 기고문 등은 일반 기사에 비해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심위의 제재조치를 받은 6개의 안건들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내·외부 필진의 의견을 피력한다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지나치게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적인 내용의 보도를 한 경우로, 이러한 사례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원회는 선심위를 운영하고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단순히 안건 자체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보도의 경위, 내용의 진위 여부, 기존 심의 사례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심의업무의 일관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힘썼으며, 실무진과 심의인력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모니터링 현황과 선거 관련 각종 현안을 공유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심의기구 간 제재조치와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의기구별로 결정·공표한 심의기준 위반 사례, 후보자 시정요구 현황, 선거 관련 이슈 등을 파악하고자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2024년에는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심위를 운영하기 위해 심의인력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심의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무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업무에 필요한 선거기사심의시스템을 개선하고 심의대상매체의 구독과 관리에 있어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정권고제도와 선거기사심의제도를 널리 알리고 교육 수요를 창출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대외적으로 심의제도를 홍보하고 선도적 심의기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